# 외국인유학생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유학생이란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VISA 발급 및 연장, 외국인등록, 집구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동전화 가입하기, 건강보험 가입하기,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유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할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유학생	1
1.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4
1.1.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4
1.1.1. 외국인유학생 개요	4
1.1.2.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령	5
1.2. 유학 개요	5
1.2.1.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6
1.2.2. 입학 절차	8
2. 입국	12
2.1.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12
2.1.1. 사증(VISA) 발급	12
2.1.2. 체류기간	21
2.2. 입국	26
2.2.1. 입국	26
2.2.2. 재입국	29
2.3. 외국인 등록	30
2.3.1. 외국인 등록	30
3. 국내 생활	37
3.1. 외국인유학생 지원	37
3.1.1.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37
3.2. 주거	37
3.2.1. 거주형태	37
3.2.2. 집 구하기	39
3.2.3. 국제이사	40
3.3. 금융	44
3.3.1. 금융 거래	44
3.4. 교통	45
3.4.1. 교통체계	45
3.4.2. 운전면허 취득	46
3.4.3. 자동차 등록	50
3.5. 통신 및 우편	52
3.5.1. 통신 및 우편체계	52
3.5.2.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54
3.6. 의료	54
3.6.1. 의료체계	54
3.6.2. 건강보험의 가입	
3.7.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58
3.7.1.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4. 학업의 종료	62
4.1. 학업의 종료	62
4.1.1. 출국	
4.1.2. 국내 취업	
4.1.3.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66



## 1.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 1.1.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 1.1.1. 외국인유학생 개요

# ☑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 교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 유학 절차

- 입학 준비
  -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및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입국

-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사증, 일반연수(D-4)사증 또는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의 [영사서비스/비자-비자(사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및 국내 생활

-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학업의 종료

교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합니다.

# 1.1.2.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령

# □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 「출입국관리법 |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및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의 발급 및 입국(「출입국관리법」 제3장), 국내 체류·활동 및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5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대학·대학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및 국제운전면허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 『 「자동차관리법」은 외국인유학생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2. 유학 개요



# 1.2.1.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 □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_ 수업연한
    -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저 46조 본문).

## ■ 입학자격

-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 ■ 학기

- 》 초·중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말일에 종료되며, 한 학년도에 2개의 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 24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 ■ 수업연한

-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 ⇒ 수업연한은 학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고등교육법」 제31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57조).



학교종류	수업연한	근거법령
대학	4년[단,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
산업대학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제38조
교육대학	4년	「고등교육법」 제42조제2항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단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7조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고등교육법」 제53조제2항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고등교육법」 제56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고등교육법」 제31조

## ■ 입학자격

- 》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 5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 33조제3항).
  - 》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 ■ 학기



- 》 고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되며, 2학기 이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각 학기는 대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정하며,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 □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 ■ 정규과정

-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앞서 언급된 입학조건(즉,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고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고등교육법」 제52조).

#### ■ 단기과정

■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좋습니다.

# ■ 한국어 연수과정

■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 연수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1.2.2. 입학 절차

# 🔲 입학 절차

- .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교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입학 사정(杳定)

- 』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정한 입학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 □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 . 초등학교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 및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및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중학교·고등학교

- 및 외국인유학생의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과 국내의 학제 차이로 인해 1학기(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수학했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및 심사 일정 안내」, 43쪽).
- 』 중·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및 심사 일정 안내 , 15쪽).
- 1. 심사서류 표지
- 2. 심사원서
- 3.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 4.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부모도 제출)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입국-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유학생의 중학교·고등학교 특례입학에 관한 세부 내용 및 특례 대상자 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학교·대학원

- □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 33조제3항).



-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 』 외국인유학생 모집정원은 대학교·대학원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됩니다(「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8항제1호). 대학교·대학원의 모집정원, 전형방법, 지원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다수의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지도·감독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일,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 기출문제, 시험시행 국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 1.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 외국 정부와 문화협정 등을 체결해서 서로 상대국가의 장학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청기간(대학 4년,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동안의 학비와 한국어 연수비용을 비롯해서 왕복항공료, 생활비, 의료보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은 초청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각 학교별 장학금

√ 많은 학교들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전담부서 또는 장학부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 본국의 장학금

√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국비유학생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장학금 및 각종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입국

# 2.1.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2.1.1. 사증(VISA) 발급

## 사증(VISA)

- 사증의 개념
  -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국가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의 발급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은 <<u>외교부 해외안전여행</u> 사이트-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

#### ■ 사증의 종류

- 』 사증은 입국가능 회수에 따라 사증은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되며(「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유학(D-2)・일반연수(D-4)・단기방문(C-3)・관광통과(B-2) 등으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 ※ 체류자격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유학(D-2)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
- 일반연수(D-4)
-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 ■ 단기방문(C-3)

』 연수 기간을 90일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 대신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4).

# 사증(VISA)의 발급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u>사증발급신청서</u>와 함께 체류자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별표 5 및 별지 제17호서식).



체류자격 ( 기호)	제출 서류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π¬(D-2)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ol> <li>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li> </ol>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일반연수 (D-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 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 3.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 수수료

■ 사증 발급신청을 할 때는 사증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사증의 종류	수수료
단수사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복수사증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 심사 및 사증의 발급

- 』 사증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함)은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확인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사증을 발급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6.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증발급의 취소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u>사증발급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체류자격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ol> <li>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li> </ol>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일반연수 (D-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 (C- 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 수수료

』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외국인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호).

발급처	수수료
재외공관의 장	사증(VISA)발급 심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5만원

-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심사 및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 』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 』 외국인입국허가서의 효력
  - 』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제4항 본문).
  - 』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본문).

#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 』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1. 미수교국가의 국민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중 체류자격 영주(F-5)에 해당하는 사람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나 그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u>사증발급인정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별표 5 및 별지 제21호서식).



체류자격	제출 서류
0=1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유학(D-2)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일반연수 (D-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 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
  - 》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발급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3제1항).
-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6.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 합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이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6항).
- 』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초청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및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을 가지지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해서,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면 그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가 회수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 ■ 사증발급인정서의 취소·변경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2.1.2. 체류기간

# ☑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본문 및 별표 1).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단서).

# □ 체류기간의 연장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 94조제17호).
  -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 . 신청인

-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u>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u>」(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 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기방문 (c- 3)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u>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7호, 별표 5의2 및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제출 서류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2.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유학(D-2)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3.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일반연수 (D-	2.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4)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3.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여권
단기방문 (C- 3)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유의사항

-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_ 수수료

-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 고러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 』심사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 □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대신에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기한이 명시된 체류기간연장불허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 때 출국기한은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변경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2.2. 입국

# 2.2.1. 입국

## □ 입국

## ■ 입국심사

- 』 사증(VISA)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허가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의 출입국항을 말함. 이하 "출입국항"이라 함)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이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단,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4.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유학 또는 연수의 경우 2년 이내, 단기종합의 경우 90일 이내)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6. 출입국규제대상이 아닐 것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및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입국을 허가할 때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5조제3항).

#### 및 입국의 금지 및 거부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11조제1항).
-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또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위의 입국금지사유 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 ■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조건부 입국허가

- 고 조건부 입국허가의 의의
  - "조건부 입국허가"란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단기간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_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

-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경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 조건부 입국허가의 기간

-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고러나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 조건부 입국허가서의 발급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에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 조건부 입국허가서는 외국인유학생이 ① 조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거나 ②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제5항).
- ※ 조건부 입국허가서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 95조제2호). 또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호).

#### \_ 보증금의 예치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받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 보증금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조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거나 ② 입국심사 조건을 갖추지 못해 출국하는 경우에 반환받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를, 그 밖의 사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항).

##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2.2.2. 재입국

## 재입국허가

#### . 재입국허가의 대상

-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 』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그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 \_ 재입국허가의 기간

- 』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 및 재입국허가기간의 최장기간은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1년,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 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재입국허가의 신청

- 및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제78조제6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a href="http://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a>)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교 재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2조제7호·제8호).

#### ■ 심사 및 재입국의 허가

-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미수교국가의 국민이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 』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7제3항).
- . 재입국허가의 효력



-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사증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나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 』 재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사유
  - 』 외국인유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신청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및 별지 제61호서식).

#### . 수수료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미화 20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호).
- 』심사 및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허가
  - 』 재입국기간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3항).
  - □ 이 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이 연장허가기간은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2항).

#### 2.3. 외국인 등록

## 2.3.1. 외국인 등록

# □ 외국인등록 개요

- 』 외국인등록의 의의
  -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 ■ 외국인등록사항

-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 9. 사업자 등록번호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 및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 □ 외국인등록 절차

#### ■ 신청인

- 』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u>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u>」(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u>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별표 5의2 및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일반연수(D- 4)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및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

# ※ 유의사항

-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a href="https://www.immigration.go.kr">https://www.immigration.go.kr</a>)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_ 수수료

』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 \_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 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
-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제3항).

#### 』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 』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3).
-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 94조제19호).
-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출국하거나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③ 사망한 때에 반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37조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및 별표 2 제4호).

####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 변경사항의 신고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 』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5천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체류지 변경신고



- 및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79조제7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제89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 ※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5조제1항 후단).
- 』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3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 ※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_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1. 외국인이 출국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 3. 국내 생활

## 3.1. 외국인유학생 지원

### 3.1.1.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 □ 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a href="http://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a>, ☎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운영시간(09:00~18:00) 내에 ☎1345로 전화하면 됩니다.

### ■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 한국 유학안내시스템(<a href="http://www.studykorea.go.kr">http://www.studykorea.go.kr</a>)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체험기를 싣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생활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의 알림마당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함)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학교생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국내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과 면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 및 영사관(이하 "주한공관"이라 함)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및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u>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 주거

### 3.2.1. 거주형태

- 대한민국에서의 거주형태
  - 』기숙사



- 및 대부분의 대학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규칙이 엄격한 편입니다.
- □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됩니다. 기숙사의 입주조건과 거주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하숙

- 』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형태입니다.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 \_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의 임차: 전세·월세
  - 』 기숙사와 하숙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전세는 일정한 금액(전세금)을 미리 제공하고 사는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전세금은 월세의 보증금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유학생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전세·월세 주택은 직접 구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_ 주택의 구입
  -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다음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 5. 실제 거래가격
-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7.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9.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및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3.2.2. 집 구하기

## □ 계약 전 유의사항

#### . 정보의 수집

』 임차 주택에 관한 정보는 학교 게시판,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 . 등기사항의 확인

- 』 관심 있는 주택을 몇 가지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26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각종 대장의 확인

- 』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택의 용도지역 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u>www.gov.kr</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8항).

#### ■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주택을 보고 주거환경, 보존 상태, 점유 여부, 하자 여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임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당사자의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등기부상의 본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등으로확인하고,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약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지급

-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여기서는 외국인유학생)이 함께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계약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계약금은 계약의 이행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민법」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 ■ 잔금 지급 및 입주



■ 잔금은 보통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입주 후 유의사항

#### ■ 체류지 변경신고

- 』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제1항).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확정).
- 따라서 임차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 이를 위반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 98조제2호).
  - ※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u>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 등록</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는 ①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함)에서 받을 수 있으며, ②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증인법」 제 77조의2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u>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u> 예규」 제2조).
  - % 주택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3. 국제이사

## □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 거주기간의 확인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 조제3항).

-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
-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국내 고용계약서, 영주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 3. 외국인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5개
3~4명	67H
5~8명	77H
9명 이상	8개

## □ 이사물품의 반입

- \_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 조제1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 ∞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및 위 두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 필수 과세대상물품
  -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 1. 선박
  - 2. 항공기
  -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 ※세관장은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 조제3항).
    - 가.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함)
    -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 나.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합니다.
    -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함):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위에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 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함)



- 』 과세가격의 결정
  - 』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 「<u>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u>」(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 9. 5. 발령·시행)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80%
    - 🐰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List Price)에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7조제2항).

#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 』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 。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 ■ 제출서류

-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래의 1. 및 2.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 조제2항).
- 1. 수입신고서
-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3. 포장명세서
-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 6. 자동차 관련 서류
-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 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재시 주의해야할 물품
  - 』 신고인이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 . 필수 과세대상물품
- ·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 》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 🗾 세금납부

- \_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_{\triangleright}$  「관세법」 제241조 또는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 납부기한

- 』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 가산금의 부과 등
  - 』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 』가산세 징수
  -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 3.3. 금융

### 3.3.1. 금융 거래

# ☑ 외국환의 반입

- 외국환 수입신고의 대상
  -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u>외국환거래규정</u>」 제 6-2조제2항제1호].
- 』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제4항).

## 🕠 환전 (換錢)

- 환전 한도액
  -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

## 🍙 송금 받기

- 』계좌의 개설
  -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
  -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송금액의 지급
  -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의 사용

- 고국내 또는 해외이용 카드 여부 확인
  - 』 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신용카드가 국내전용인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전용인 경우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교체발급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발급
  - 』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 3.4. 교통

### 3.4.1. 교통체계

# □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 시내교통
  - . 한 도시와 그 근교지역 내를 다니는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번호, 행선지명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므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확인한 후 시내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시내버스 정거장은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내버스의 교통비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 교통카드는 정거장 근처의 교통카드 판매소나 지하철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교통비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및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비싼 교통수단이지만, 길을 모르거나 시내버스 등의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미터기를 이용해 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심야에는 요금이 할증됩니다.

#### \_ 시외교통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는 시외·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연결해주므로 그 이용이 편리하며 버스 터미널이 한 도시에 1~3개 정도만 있으므로 찾아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인기노선은 수시로 운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하루에 몇 대 운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터미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운행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구입하거나 운행노선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기차는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이 적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편이고, 무궁화호는 속도가 느리고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기차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철도승차권은 기차역, 코레일 열차예매사이트(www.letskorail.com) 또는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거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 선박은 섬에 들어갈 때, 비행기는 비교적 먼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선박과 비행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자가운전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3.4.2. 운전면허 취득

# □ 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



96조제1항 전단 및 제4호).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및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 1.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92조).
  -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 구류와 과료

"구류"란 수형자를 구금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 46조).

"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7조).

## □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여부
  -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문정보의 제공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37조의2제2항).

#### ■ 운전면허시험 과목

-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과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및 제 85조제1항).
-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이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및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제51조 및 별표 3).

		면제되는 시험				
면제대상자	면허종류	거서	학과시험			
		적성 검사	법령 과목	점검 과목	기능시험	시험 도로주행시험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제2종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sup>보통</sup> 외국면허증 소지자					면제	면제

#### 』 운전면허의 효력

- 』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하면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4.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8.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에 한정됨)
- 12.「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1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 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과)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를 저지른 경우
- 16.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 19.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경우
- 2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2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해야 함)
- 23.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24.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함.
- 26.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27.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8.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위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 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 ※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37조의2제1항).

## 3.4.3. 자동차 등록

### 🕠 자동차 등록의 의의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 ... 등록방법
  -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 신규등록

- .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3항).
- ※ 이를 위반해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84조제4항제1호).

## ■ 제출 서류

- 』 신규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를 구입한 본인이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u>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
  - ...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함)



-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 및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 안전검사증
- 및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인 경우: 내압용기장착검사증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
-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서류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 □ 이전등록

- .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 때,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이전등록 신청
  - 』 이전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양수인(자동차를 산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u>이전등록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서식).
  - 1.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인 경우에 한함)
    -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 > 자동차를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1.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후단).

#### □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 자동차등록증의 발급
  -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 조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 .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 3.5. 통신 및 우편

# 3.5.1. 통신 및 우편체계

### □ 대한민국의 통신체계

- 전화
  - 전화에는 휴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특정장소에 전화선을 개설하고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및 길거리에 대중을 위해 설치된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 전화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내통화를 할 때는 지역번호 없이 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되며(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눌러야 함), 시외통화를 할 때는 국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고유의 지역번호를 눌러야 연결됩니다. 또한, 해외에 전화를 걸 때는 해외연결번호(예를 들어, 001, 002 등)와 해당국가의 국가번호를 먼저 눌러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지역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지역번호	지역	지역번호		
서울	02	부산	051		
경기	031	울산	052		
인천	032	대구	053		
강원	033	경북	054		
충남	041	경남	055		
대전	042	광주	062		
충북	043	전북	063		
세종	044	제주	064		

####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유선 랜(LAN)서비스와 무선 랜(LAN)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연결속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출고속 인터넷 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며, 인터넷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TV와 라디오

## ■ 정규방송

■ 정규방송(KBS1, KBS2, MBC, SBS, EBS)과 라디오는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채널만 맞추면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 ■ 정규방송 외의 방송

■ 정규방송 외에 뉴스, 음악, 스포츠, 드라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에 가입해야 하며, 해외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가입해야 합니다. 케이블™ 및 위성™ 상품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 ■ 국내우편

- 국내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규격과 중량 및 배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규격우편물의 경우에는 따로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표를 사서 붙인 후 길가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소포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택배서비스는 현재 우체국과 여러 택배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회사의 직원이 직접 고객이 있는 장소에 와서 물품을 수거해 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국제우편

- 』해외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항공운송 또는 선박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선박운송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빠르게 배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_ 국제우편을 운송해 주는 회사는 우체국과 그 밖의 여러 회사가 있으므로 본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하면 됩니다.

## 3.5.2.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이동전화의 가입
  -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선불이동전화'란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불이동전화를 사용하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이용료가 선불카드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 』이동전화의 이용

-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및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_ 이동전화의 해지
  -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 가입방법
  - 』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 \_ 가입절차 등
  - 이 경우 가입 절차, 이용요금의 납부,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은 해당 회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 3.6. 의류

# 3.6.1. 의료체계

# □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 보건소
  - 및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병원

- 』의원이나 병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주로 1차 진료를 실시하지만, 병원의 경우 간단한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용도 비싼 편이지만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병원에서 모두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약국

- · 약국에서는 소화제, 두통약, 멀미약, 상처치료연고 등 간단한 상비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고러나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가 필요한 약은 병·의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비 관련 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은 그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 』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등을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대한민국에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진료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 등을 잘 챙겨야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6.2. 건강보험의 가입

### □ 건강보험의 가입

- ▮ 가입 대상
  - 및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61조의2제1항·제2항).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_{\bullet}$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 ▮ 가입 절차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및 별표 9 참조).

체류구분	가입시기
Option on 구조기세(P. 4. 2)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유학(D-2), 초중고생(D-4-3)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 가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 마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21. 2. 5., 1쪽).
-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u>장기체류 재외국민 및</u>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제4조제4항 및 별표 1].



체류자격	제출 서류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7=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통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유학(D-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일반연수(D-4)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가입자격의 상실

- 』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 건강보험료의 납부
  -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운영

1577-1000(이용문의) 또는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상담 가능

### 3.7.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3.7.1.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 허용 대상
  -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20조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 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 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 허용 분야

-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8쪽참고).
-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2.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 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 다만,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4.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 5.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6.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 $E-1\sim E-7$ )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 ※ 다만,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허용 범위
  - ▮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한국어	— · ·		허용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대학 유형	하더			주중	주말, 방학	한국어우수 (주중)	
어학		①TOPIK 2급	Х	6개월	10시간		10시간
연수 과정	무관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동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이후 평가 41점 이상   이 가능		20시간		25시간
전문	전문 ·		Х		10시간		10시간
학사 과정	과정   <sup>①TOPIK 3급</sup>	①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계 이상 이수 또는	즉시가능	25 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사전평가 61점 이상 1~2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Х		10	)시간	10시간	
학사	학년		0	즉시가능	25 시간	제한없음	30시간
과정	3~4		10시간		)시간	10시간	
	3~4 학년	①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0	즉시가능	25 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석/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b>구관</b>	Х		15시간		15시간
박사 무곤 과정	무관		0	즉시가능	30 시간	제한없음	35시간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의의
  - \_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_ 신청인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u>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u>」(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체류자격	대리인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유학(D-2)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일반연수(D-4)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u>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및 별지 제34호서식).

#### 1. 여권

-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3.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 ※ 유의사항

-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 』심사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5조제3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4. 학업의 종료

# 4.1. 학업의 종료

### 4.1.1. 출국

# 📭 출국

## ■ 출국심사

- 』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35조제4항).
-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 3. 그 밖에 「<u>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u>」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출국허가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가 끝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 다만, 정보화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 🔻 출국정지

- 출국정지의 사유
  - 및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 5.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 \_ 출국정지의 해제

-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출국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가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 』 외국인유학생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출국정지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4.1.2. 국내 취업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 』 대한민국에 유학 또는 한국어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 . 체류자격의 변경
  - 』 따라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신청인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u>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u>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체류자격	제출 서류
취재(D-5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자격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무역경영 (D-9)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구직(D- 10)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E-1)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만 해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화지도 (E-2)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자격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연구(E-3)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졸업증명서 · 총(학)장의 추천서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기술지도 (E-4)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활동 (E-7)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원보증서 ·학교설립 관련 서류



#### ※ 유의사항

-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6조제3항).
-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 위에 열거한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의견을 붙여 송부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소·변경

- 』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4.1.3.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 🕠 진학 유형

#### ■ 연수과정 후 진학

-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한국어 연수과정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을 포함]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D-2)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및 별표 1의2).
-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연수(D-4) 또는 단기방문(C-3)에서 유학(D-2)으로 그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 94조제16호).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u>학업의 종료-학업의 종료-국내 취업</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학과정 후 진학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4)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 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ょ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 94조제17호).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u>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체류기간</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